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 등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 명확히 규정 〉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392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 등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 명확히 규정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27일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3 신설).

Ⅲ. 검토의견

1. ‘장애인’ 등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 명확히 규정

개정안은 장애인,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가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8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을 위한 구매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른 다자녀가구를 말한다) 등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

현행	개정안
	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58조1)에서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차상위 이하 계층·청년·다자녀가구 등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 1)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로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는 별도의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구매자·용도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 사항]

전기승용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전기승합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대형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전기화물차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자료: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발췌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수급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수	국비	대수	국비	대수	국비	대수	국비
전기차	90,499	970,502	151,933	1,356,887	139,616	1,309,108	133,010	971,443
다자녀 가구	687	6,860	732	5,262	521	3,061	7,085	34,738
차상위 이하 계층	11	92	109	1,534	88	1,222	99	735
장애인	618	6,437	959	6,665	588	3,593	611	2,457

주: 다자녀 가구 및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의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비 소요액은 추가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장애인의 경우 추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의 규모만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2)에 따른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3)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③ 「공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주택 특별법」 제48조4)에 따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⁵⁾ 제58조제3항제1호후단에서 이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중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를 정하여야 하는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용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58조의13과 같이 특정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현행 조항에 차등 지원의 예시로 ‘장애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매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개편하여 공지하고 있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전기자동차의 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용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장동향 및 보급여건 등을 반영하여 구매자 특성에 따른 보조금 추가 지원 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침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참고로, 현재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장애인⁶⁾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금전적 추가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⁷⁾함.

문 의 처
02)6788-5536

6)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11p

4-1-3.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함

- 이 경우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7)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 지원 대상 확대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나, 지원 대상의 범위, 규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현 시점의 구체적 비용 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5.3.31.)